

# 독일 재생가능 에너지 신법 (Erneuerbare Energien Gesetz 2009)

김 진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박사

## I. 서론

## II. EEG 2009의 내용

1. 목적
2. 민법에 의한 지원책 - 민간의 참여
3. 실질적 연관성
4. 임시규정
5. 주요 신규 규정 개관
6. 적용 범위
7. 단계적 보상 및 자원마련 메커니즘
8. 유럽법과의 조화
9. 비판

## III.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촉진 난방법(EEW)

1. 목적
2. 두 가지 핵심 모델: 지원과 의무
3. 실질적 연관성
4. 사용의무
5. 지원
6. 비판

## IV. 평가

## I. 서론

1997년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세계 각국이 탄소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법제도 및 정책적 정비와 실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은 2004년의 재생가능에너지법(EEG 2004)을 대체하는 재생가능에너지신법(Erneuerbare Energien Gesetz 2009; 이하 EEG 2009)과 재생가능에너지사용의촉진을위한 난방법(Erneuerbare Energien Wärmegesetz; 이하 EEW)을 2009년 1월 1일부로 발효시켰다.

유럽이사회와 G8 정상들은 이미 2008년에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의 확대를 결정한 바 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독일정부는 EEG 2009와 EEW를 핵심적인 개별조치로 하는 기후 및 에너지 통합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의 이와 같은 국내법의 정비는 전력역내시장에 있어서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기생산지원에 관한 EU 지침(Richtlinie 2001/77/EG)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2020년까지 전력부문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사용 비율을 30%까지 확대해야 하는 EU 차원의 의무이행을 위해서 에너지 체계를 현대화시켜야 하는 실질적 필요에 의해 EEG 2009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2012년부터 이산화탄소 감축의무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우리의 경우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의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기초, 그리고 능률적 시행 및 조치들을 독일을 비롯한 이 분야에서 앞선 여러 국가들의 예에서 그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 II. EEG 2009의 내용

### 1. 목적

EEG 2009의 목적은 독일의 전력공급을 현저히 바꾸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의 사용 비율을 현재 약 16%에서 최소 30%까지 상승시키고 이후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EEG 2009 §1(2)). 독일정부의 지속가능 전략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력, 난방, 연료(휘발유, 등유 등)에 쓰이는 전체 에너지의 절반 가량을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sup>1)</sup> 이는 전력생산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임을 의미한다.

1) Bundesregierung, Nachhaltigkeitsstrategie, 2002, p. 97.



## 2. 민법에 의한 지원책 - 민간의 참여

앞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일 의회는 국가의 임무 중에서 흔히 나타나는 허가 요건의 형태와 같은 규정을 담은 공법이 아니라 민법을 활용한다. EEG는 기후보호의 임무를 위해서 민간 송전망 운영자를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체의 의무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발전소)를 각 업체가 보유한 송전망에 연결하고 그 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집전하여 법정 가격으로 그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로써 EEG는 위임 없는 영업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한 청구권처럼, 법적 채권관계에 관한 권리를 제공한다(EEG 2009 §4). EEG는 양 당사자의 모든 주요의무와 송전된 전기 가격을 포함하여 채권관계의 대상을 확정해두고 있다.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는 킬로와트시(kWh)당 2.5센트,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에는 43.01센트 사이에서 그 대금이 지급된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경우 현재 시장가격인 킬로와트시당 약 5센트를 넘는다.

## 3. 실질적 연관성

현재 독일에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약 35만 개 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2000. 4. 1 EEG 발효 이후로 가동되고 있다. EEG 2009 §1(2)에 명시된 목표가 달성되면, 발전소 수는 몇 배로 늘어날 것이다. 그 수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이 바로 법적 문제들이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민사법원과 연방환경부가 설립한 청산소의 의무다.

## 4. 임시규정

EEG 2009에는 여러 임시규정들이 있다. 이 규정들은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을 촉진하고, 사법적(私法的) 성격을 띠며 법적 채권관계라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송전망 운영자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발전소에 자사 송전망을 연결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집전하여, 법으로 정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 a) 송전법: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보상에 관한 최초의 명확한 규정은 1990년 12월 7일의 송전법에 포함되었다. 4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은 도입 후 거의 10년 동안 풍력에너지 사용을 성공적으로 촉진하였다.
- b) EEG 2000: 2000년 4월 1일에 EEG 2000이 송전법을 대체하였다. EEG 2000은 송전법의 재생가능에너지사용 촉진메커니즘을 계승하여 경제적 운용을

가능케 한 가격을 예정했다. 이 법을 토대로 불과 4년 만에 전기 공급에 있어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이 두 배로 늘어 약 9%에 이르렀다.

- c) EEG 2004: 2004년 8월 1일에는 EEG 2004가 EEG 2000을 대체하였다. 의회는 EEG 2000의 재생가능에너지사용 촉진 방안을 유지하였으나 여러 신규 규정을 도입하여 조문의 수도 13개에서 21개로 늘었으며,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15% 이상으로까지 증대시켰다.

## 5. 주요 신규 규정 개관

EEG 2009는 유용성이 입증된 민법적 지원방안을 매우 상세하게 보완하고 있다. EEG 2004의 21개 조항 외에 다수의 첨부분서를 포함한 66개 규정들을 탄생시켰다. 완전히 새로운 규정들 중에는 송전망부족 처리규정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sup>2)</sup>

또한 이번 개정법은 보상기준을 새로이 조정하고 변화한 시장 조건에 걸맞도록 하는 데 제한된다. 이 점에서, 특히 풍력이나 바이오매스 발전소 운영자가 이익을 볼 것으로 보인다.

내륙에서 생산한 풍력에너지 보상액은 킬로와트시당 7.87센트에서 9.2센트로<sup>3)</sup>, 해안에서 생산한 전기에 대해서는 6센트가 추가 지급되어 킬로와트시당 15센트로<sup>4)</sup> 증가했다. 앞으로는 바이오매스에서 얻은 전기에서도<sup>5)</sup> 현저히 높은 보상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물론 보상금 증액은 그리 두드러지진 않고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부록 1~3은 바이오매스 사용과 실질적으로 연관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추가지불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재생가능원료 또는 거름 같은 폐기물 사용(부록 2),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열을 이용(부록 3)하는 것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원상복귀한 것은 태양광에너지뿐으로, 의회는 대형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의 보상금을 41.79센트에서 33센트로 줄였다.<sup>6)</sup>

## 6. 적용 범위

- a) 대상: EEG 2009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것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얻은 전기와

2) EEG 2009 §§9ff.

3) EEG 2009 §29.

4) EEG 2009 §31.

5) EEG 2009 §27.

6) <http://www.erneuerbareenergien.de/inhalt/41897/40508> 참조.



탄광가스다.<sup>7)</sup> EEG 2009 §3 Nr. 3에 의거한 재생가능에너지는 조력, 파력, 열도구배, 조류에너지 등 수력에너지와 풍력, 태양열, 지열, 바이오매스에너지가 있다.

- b) 공간: EEG 2009의 적용을 받는 전기는 독일 내 또는 독일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생산된 것이다.<sup>8)</sup>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어 독일로 송전된 전기는 고려되지 않는다.
- c) 대상자: 재생가능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사용하는 자는 모두 청구권을 갖는다.<sup>9)</sup> 발전소를 (자사 송전망에) 연결하고 전기를 배전, 보상해야 하는 자는 각각 가장 가까이 있는 송전망 운영자다.<sup>10)</sup>
- d) 시간: EEG 2009에 근거한 유효한 전기는 2008년 12월 31일 이후에 가동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뿐이다. 이 때 이미 가동 중이던 발전소의 전기도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물론 EEG 2009 §66는 이 원칙의 여러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사안에서는 EEG 2009 발효일까지 유효한 법을 일러주거나 특정 상황에 적용할 특별규정을 명확히 적시해두고 있다. 특히 기존 발전소에 대해서도 EEG 2009 §66에 의거, 원칙적으로 각 발전소 가동시점의 보상규정이 적용된다.

### 7. 단계적 보상 및 자원마련 메커니즘

EEG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지원하고 보상금 지급액의 재금융(Refinanzierung)을 위해 단계적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다. 이 메커니즘이 도움이 되는 곳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송전망 운영자들의 지역마다 다른 경제적 부담을 독일 전역에 걸쳐 균일화시키고, EEG에 따라 생산한 전기를 독일 내 모든 전기 판매회사에게 동등하게 배전하며, 이 회사에게서 보상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모든 각 단계는 법적 채무관계로 구체화되어 있다.

EEG의 다섯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단계: 발전소 연결, 송전망 운영자를 통한 전기 집전 및 보상

7) EEG 2009 §2 Nr. 1.  
 8) EEG 2009 §2 Nr. 1.  
 9) EEG 2009 §3 Nr. 1, 2.  
 10) EEG 2009 §3 Nr. 8 I.V., §§5, 8.

- 2 단계: 송전계통운영자를 통한 전기 집전 및 보상
- 3 단계: 송전계통운영자 간 수평적 균일화
- 4 단계: 전기 판매업체를 통한 전기 집전 및 보상
- 5 단계: 전기 판매업체를 통한 마케팅(일부만 규정됨)

#### (1) 1단계: 연결, 집전, 보상

EEG에 의거 송전망 운영자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자사 송전망에 연결하고,<sup>11)</sup> 그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 전체를 집전하여 송전, 배전하며 보상해야 한다.<sup>12)</sup> 발전소가 바로 자사 송전망이 아닌 학교 같은 제3자의 것에 연결되어 있어 그 3자의 송전망을 통해 전기가 자사 송전망으로 들어온 때<sup>13)</sup>(이른바 ‘상업 재정적 송전’)에도 마찬가지로 송전망 운영자는 전기를 집전하고 그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 1) 재생가능에너지의 우위

발전소 연결뿐만 아니라 집전, 송전, 배전도 ‘즉시’, 곧 송전망 운영자의 태만 없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sup>14)</sup>

이로써 송전망 운영자가 취할 수 있는, 원칙적으로 모든 조처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는 화석 핵연료로 만든 전기보다 우위를 점하게 된다. 송전망 운영자는 경쟁 상태에 있는 경우 재생가능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다른 발전소보다 시간적, 실제적으로 먼저 자사 송전망에 연결하고, 그 전기를 다른 전기보다 먼저 집전하여 송전, 배전해야 한다. 송전망 운영자는 기존 발전소가 먼저 연결되어야 하거나 거기서 생산한 전기를 우선 집전 또는 송전해야 하므로 발전소 연결이나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집전, 송전, 배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송전망 운영자가 ‘재생가능에너지 우위원칙’을 벗어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이를 발전소 운영자와 계약으로 합의하였고, 둘째, 그 합의가 발전소를 송전망에 더욱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도록 할 때만이다.<sup>15)</sup>

11) EEG 2009 §5 (1).

12) EEG 2009 §8 (1), §§ 16ff., 23ff.

13) EEG 2009 §8 (2).

14) EEG 2009 §§5 (1), 8 (1) 1.

15) EEG 2009 §8 (3).



### 2) 용량 확대

화석 또는 핵연료로 생산한 전기가 송전망에 더 이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송전망의 용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송전망 운영자는 ‘공급희망자의 요구’<sup>16)</sup>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집전, 송전, 배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사 송전망을 “기술 수준에 상응해 최적화, 강화시키고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송전망 운영자로 하여금 송전망의 용량을 확대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무리일 때에는 상기의무는 유효하지 않다.<sup>17)</sup> 송전망 운영자가 송전망 용량 확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sup>18)</sup>

### 3) 송전관리

EEG 2009는 §11에서는 송전망 운영자의 송전망 용량이 소진했고 아직 용량확대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을 경우(이른바 ‘송전관리’)에 업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처음으로 상세히 규율하고 있다. 이 과도기에서는<sup>19)</sup> 송전망 운영자에게 재생가능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특정 조건하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sup>20)</sup> 있다. 그 대신 발전소 운영자는 송전망 운영자에 수익금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송전망 사용요금을 산정할 때 송전망 운영자는 송전망 용량을 확대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활용했을 때에만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다.<sup>21)</sup>

### 4) 보상청구권

상기 규정에 따라 송전망 운영자의 송전망으로 전기가 들어오면 §16 I EEG 2009에 의거 법적 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보상금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20년이다.<sup>22)</sup> 청구권의 정도는 §§18~33 EEG 2009에 따르며, 그 규정들은 다양한 기준 별로 상이하다. 보상은 한편으로 에너지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태양광일<sup>23)</sup> 때가 수력<sup>24)</sup>보다 청구권의 수준이 현저히 높다. 다른 한편으로 청구권 수준은 각

16) EEG 2009 §9 (1), 1.  
 17) EEG 2009 §9 (3).  
 18) EEG 2009 §10 (1), 1.  
 19) EEG 2009 §11 (1), 2.  
 20) EEG 2009 §11 (1), 1, Nr. 1-3.  
 21) EEG 2009 §12 (2).  
 22) EEG 2009 §21 (2) 1.  
 23) EEG 2009 §33.  
 24) EEG 2009 §23.

발전소의 전기 생산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이 능력이 높을수록 특수 보상은 줄어들어 드는 것이다. 풍력발전에서만 보상수준이 기존 설비에 의한 전기 생산능력에 따르지 않고, 입지가 얼마나 좋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 비교척도는 EEG 부록 5에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평균치를 산정하여 세운 발전소다. 마지막으로 보상수준은 발전소가 가동되기 시작한 연도다. 이미 가동 중인 발전소보다 신축 발전소가 §20 EEG 2009에 따라 원칙적으로 더 적은 보상을 받는다. 매년 감소하는 보상 비율은 기술에 따라 1~10% 사이이다. 이런 방식으로 EEG 2009는 기술발전과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는 것이다.

#### (2) 2단계: 송전계통 운영자를 통한 전기 집전 및 보상

지원 및 재원마련 메커니즘의 두 번째 단계에서 전기를 발전소에서 집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송전망 운영자는 그 전기를 송전계통 운영자로 보내야 한다.<sup>25)</sup> 그 대신 그와 동등한 정도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sup>26)</sup> 송전계통 운영자에 전기를 보내는 것은 (이어지는 단계들처럼) ‘전력망접근(사용)에관한법령’ (StromNZV)에 따른다.

#### (3) 3단계: 송전계통 운영자 간 수평적 균일화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송전계통 운영자가 전기를 받아 대가를 지급한 데 이어 세 번째 단계는 요컨대 송전계통 운영자 간 수평적 균일화다. 이 단계에서 독일의 모든 송전계통 운영자(즉 EnBW, E.ON, RWE, Vattenfall)는 모든 업체가 비교적 동일한 EEG-비율로 전기를 집전하고 보상할 때까지 각각 다른 업체에 대해 법적 ‘균일화 청구권’을 갖는다.<sup>27)</sup> 이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비율이 높은 지역 내 송전망 운영자들의 부담이 줄어들며, 재생가능에너지 비율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비용 면에서 모두 지역적 차이가 독일 전역에 걸쳐 균등해지는 것이다.

#### (4) 4단계: 전기 판매업체를 통한 전기 집전 및 보상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3단계에서 균일화시킨 뒤에 오는 송전계통 운영자의 의무는 각 운영자의 송전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전기 판매회사에게 전기

25) EEG 2009 §34.

26) EEG 2009 §35.

27) EEG 2009 §36





를 보내는 것이다. 전기 판매회사의 의무는 2단계에서 송전망 운영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송전계통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sup>28)</sup>

### (5) 5단계: 전기 마케팅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되어 이전 4단계를 모두 거친 전기는 판매회사가 전기거래소에서 또는 상호 간 자유시장에서 획득한 기타 전기제품과 더불어 각 판매회사의 ‘전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EEG는 이 ‘EEG-전기’를 어떻게 다룰지 일부를 규율하지 않고 있다. 즉, 그 전기를 팔라내어 다른 전기 판매업체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매각하든지, 자사 전기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도 상관없다.

- 1) 상기 마지막의 경우, 즉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3자에게) 되팔기에 대해서 EEG는 §§53~54 EEG 2009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기 판매업체에게는 자사에 발생하는 비용(소위 기회비용)을 – 여기서 더욱 근접하게 규정된 조건하에서 – 분명히 입증할 권리가 있다.
- 2) 그 밖에도 §§40ff. EEG 2009에서는 전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기업과 궤도차에 대해 특별규정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 기업과 궤도차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집전과 여기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 상황에 결부한 청구권을 갖는다.<sup>29)</sup>

## 8. 유럽법과의 조화

EEG의 합헌성 및 유럽 보조금법과의 조화에 관한 논의는 연방최고법원과 유럽사법재판소가<sup>30)</sup> 우호적 판결을 내린 이후로 잦아들었다. 이와 달리 유럽사법재판소가 당시 이 문제를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EEG와 로마조약(이하 EG) 제28조와의 조화 문제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 논의에 다시 불을 당긴 것은 핀란드의 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기를 생산, 거래하는 업체가, 독일, 영국, 폴란드, 스웨덴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sup>31)</sup> 그 문건의 일부는 상품판매의 자유에 개입하는 것이 1단계에서 모든 경우에 보장, 보상된 전기집전과 4단계에서 전기 판매

28) EEG 2009 §37.

29) EEG 2009 §§41-43.

30) ABIEG Nr. C 164 v. s. 3, 2002. 7. 10.

31) www.efet.org 참조.

회사의 집전, 보상의무를 통해 보전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 반대 의견은 특히 EG 지침 2001/77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 지침은 EEG(Art. 4 I 참조)에서처럼 가격조정도 허용하고 모든 회원국들이 각기 지원책을 자국 전기에만 활용하는 것을 적어도 암묵적으로 허용한다. 또 다른 근거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개입은 환경보호를 위해 정당하다는 것이며,<sup>32)</sup> 이 주장이 옳은 까닭은 자국의 지원책을 외국 전기에 대해 쓸 경우, 회원국들의 지원책과 특정 환경정책적 지원목표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sup>33)</sup>

## 9. 비판

EEG 2009는 재생가능에너지 전기 비율을 2020년까지 30%로 늘리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워 모든 주체에게 계획의 확실성을 주고 있다. EEG 2009는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운영자를 경제적, 법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EEG 2009에는 여전히 비판의 여지도 있다. 몇몇 개별 규정들(특히 바이오매스로 생산한 전기에 대한 추가규정이나 기존 대형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해 §66 I Nr. 5 EEG 2009에서 명시한 특별규정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혹은 전기소비자의 이해에 반하는 로비가 성사되고 부분적으로 매우 높은 보상률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 중 한 증거는, 지금까지 처리에 비용을 지불해왔던 거름 대신에 이제는 수익금을 달성한다는 사실이다. Art. 87f. EG에 따라 집행위의 보조금 감독을 보장하는 것처럼 효율적인 가격통제가 EEG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눈에 띄는 것은 EEG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20 (2) 1의 규정이나 바이오매스로 생산한 전기에 지급하는 각종 보너스(Boni)가 해당한다. 생각건대, 여기서는 단순하고 일괄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나 EEG의 법적인 최대 결함은, 상기 유럽법과 빛을 위협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환경전기 프로젝트’의 재원마련이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하튼 EEG는 법령제정자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64

32) From Debate to Design: Issues in Clean Energy and Climate Change Law and Policy, p. 19, 2008.

33) Policy design to facilitate compliance with EU Renewable Targets, 2007.



III EEG 2009는 독일 정부에게, EEG-균일화 메커니즘 제4단계를 송전계통 운영자와 전기 판매회사 간에 순전히 재정적인 균일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로써 전기 판매회사와 그 협력업체의 상품 거래의 자유에 개입하는 것은 완전히 차단될 것이다. §66 I Nr. 6 lit. a EEG 2009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더 나은 송전망, 시장 통합을 위한 재정적 혜택”을 규정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스페인 모델을 따라 혜택을 주고, 생산한 전기를 §§5ff., 16ff. EEG 2009에 따라 송전하여 송전망 운영자로 하여금 그 전기요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전기 시장에 매각(소위 선택적 직접마케팅)<sup>34)</sup>하는 것이다. 이 방안을 실행하면, 제1단계의 법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 비판이라 할지라도 EEG는 전체적으로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매우 효과적인 법이라는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된다.

### III.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촉진 난방법(EEW)

#### 1. 목적

EEW의 목적은 난방시장에서 거대한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다. 즉, 2020년까지 난방에너지 사용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14%로 늘리는 것이다. 2050년에는 독일 정부의 의지에 따라 난방에너지 수요의 절반을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할 예정이다.

#### 2. 두 가지 핵심 모델: 지원과 의무

EEW에 의거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는 두 가지 핵심, 즉 냉난방을 위해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해야 할 공적, 법적 의무와 정부의 추가 지원프로그램에 근거하고 있다. 의회는 이처럼 ‘지원과 의무’ 모델을 채택하였다.

#### 3. 실질적 연관성

매년 독일에서는 신축건물 약 17만 5천 채가 건설된다. §3 I EEW의 재생가능

34) <http://www.erneuerbare-energien.de/inhalt/40902/40870/> 참조.

에너지 사용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동시에 매년 난방설비 약 60만 개가 보수되는데, 이 때 사용의무는 없지만 §§13ff. EEG에 따른 지원을 요구할 수는 있다. 특히 질서법적 사용의무는 수많은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 4. 사용의무

- 1) 적용범위: § 3 I i.V., §§19~20 EEW에 의거 신축건물 소유주는 50m<sup>2</sup> 이상의 사용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서 제외되는 건물은 에너지절약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과, 또한 의무 준수가 공법 규정에 배치되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때 또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될 때다.<sup>35)</sup>
- 2) 사용의무의 내용: §3 I EEW에 따라 상기 의무를 진 건물소유주는 '난방에너지 수요'를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여 채워야 한다. '난방에너지 수요'라는 개념은 §2 II Nr. 4 EEW에 따라 냉난방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 수요를 포괄한다. §2 I EEW에 따른 재생가능에너지에는 지열, 대기열, 태양열 에너지와 바이오매스다.
- 3) 사용의무의 규모: §3 I EEW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로 채워야 하는 에너지 수요의 정확한 비율은 §5 EEW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에너지 형태에 따라 다르다. 태양열 에너지에서는 최소 15%, 바이오가스에서는 30%, 액/고체 바이오매스와 지열, 대기열 에너지에서는 50%다. 복수의 건물을 소유한 자들은 §6 EEW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이 법에 맞는 설비에 따라서 바이오매스(Nr. II), 지열과 대기열(Nr. III)에 대해 추가로 기술적 요구사항이 유효하다. 이것은 사용의무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지켜야 한다.
- 4) 대체수단: 일면 §7 EEW는 §31 EEW의 의무를 다음에 열거한 대체수단으로 충족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즉 폐열(Nr. 1a) 또는 열병합발전(Nr. 1b)열을 최소 50% 사용하거나, 에너지절약대책 또는 국소 및 지역난방(Nr. 3)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모든 수단들을 위해 EEW의 부록에서 추가로 기술적인 요건들을 정의하고 있다. 그 중 특히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은 §7 Nr.2 EEW에 따른 에너지 절약에 유효한 Nr. VI의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대체수단을 통하여, 에너지 손실을 위해 에너지절약 법령(EnEV)이 허용하는 최고치가 최소 15% 미만이어야 한다.

35) EEWärmeG §9.



- 5) 결합: § 8 I EEW에 따라 사용의무는 재생가능에너지원과 대체수단을 결합하여 충족할 수 있다.
- 6) 시행: 법 시행을 담당하는 자는 주법(Landesgesetz)에 따라 보통 건설감독기관이다. 건물소유주는 이 기관에 §10 EEW에 따라, §3 I EEW의 의무를 지켰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독기관은 ‘최소한 적절한 무작위검사’를 통해, 건물소유주가 §3 I EEW의 의무를 다하는지, §10에 따라 증명서의 진위를 심사하는 일을 확인해야 한다.

### 5. 지원

사용의무 외에 ‘두 번째 핵심’으로서 EEW는, 난방열 생산을 위해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연간 5억 유로의 지원금을 예정해 두고 있다. 세부사항은 § 14 EEW에 따라 ‘에너지시장에서 재생가능에너지사용 지원책에 관한 지침’이 규율한다. 하지만 §15 I EEW에 따라 (2항의 예외를 제외하면) 오직 §3 EEW의 의무를 충족하는 데만 유용한 수단은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가장 높은 지원금 비율은 최종적으로 사용의무의 예외가 되어 원칙적으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 기존 건물들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 6. 비판

§3 I EEW의 사용의무는 신축건물, 즉 매년 약 17만 5천 채 정도만 포괄하고 있다. 3천 8백만 가구가 넘는 (나머지) 건물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13의 지원금 규모는 시뮬레이션 계산에 따르면 14%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불충분하다.

## IV. 평가

EEG 2009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에 대한 야심찬 목표들을 명시하고 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EG는 이미 유용성이 입증된 민법상의 지원혜택을 고수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운영자의 법적 지위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유럽법과 충돌하는 위험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면, 앞으로 EEG는 에너지 부문에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결정적 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장기간에 걸친 독일의 법·정책적 노력과 실시는 이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향후에 더욱 가

파르게 발전할 전망이다.

EEG 2009의 경우,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거리가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전환해야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는 현 세대의 막중한 의무이다. 따라서 그것을 우리 미래의 생존여부가 달린 절박한 현안으로서 인식하여, 법·정책적으로나 연구 및 산업현장에서의 기술적인 면에서도 미래를 위한 연구와 투자를 최대한 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